

긴급동의

심의결과 위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제/ㄴ 호	7	1986.3.6	총재 박성상

의 안 "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"
일부개정

의결사항 "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"을
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, 제64조 및 제65조
법규조항

제의취지 최근 시장실세금리의 안정화 및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
금리자유화 여건이 다소나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므로 CD금리의
최고율제를 철폐하여 CD금리를 자유화하고자 본 건 전기와 같이
의결할 것을 제의함

< 참고 > 관계법규조항 발췌

한 국 은 행 법 제7조

① (생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

한 국 은 행 법 제64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

② (생략)

한 국 은 행 법 제65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, 기타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"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" 일부개정

현행	개정	비고
1.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가. 최고이율 : 연 11.5% 나. ~미 (생략)	1.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가. (삭제) 가. ~나. (현행과 같음)	금리자유화 호 제상
2.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대전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가. 최고이율 : 연 12.5% 나. ~다. (생략)	2.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대전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가. (삭제) 가. ~나. (현행과 같음)	금리자유화 호 제상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
4. 기타 (신설)	4. 기타 가.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기타조건은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시장동향 및 여수신업무추진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. 다만 한국은행 총재는 위의 최고 이율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 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나. ~다. (현행과 같음)	호 제하
가. ~나. (생략) (신설) (신설)	5. 실시일자 : 1986. 3. 7 6. 경과조치 가. 1986. 3. 6 이전에 이미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는 종전이율을 계속 적용한다. 나. 1986. 3. 6 이전에 이미 취급한 양도성예금증서 대출에 대하여는 어음 대출의 경우에는 어음기일까지 종전 이율을 계속 적용하며, 증서대출의 경우에는 1986. 3. 6까지의 이자 계산은 종전 해당이율로, 1986. 3. 7 이후의 이자계산은 개정이율로	